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990 판결 [보증채무금]

재판경과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2990 판결

부산지방법원 2000. 12. 7 선고 99나20077 판결

전문

【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주식회사 AA은행(소송대리인 변호사 정BA)

【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신CA기금(소송대리인 변호사 허BB)

【원심판결】 부산지방법원 2000. 12. 7. 선고 99나20077 판결

주문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의, 부대상고비용은 원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를 함께 본다.

원심판결과 원심이 일부 인용한 제1심판결의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에게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원고와 사이에 김DA의 지역중소기업 구조조정작업 대출금 채무에 관한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당해시설 설치 즉시 공정증서에 의한 양도담보를 취득하여야 합니다.’라는 내용의 특약을 하고, 이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신CA기금은 보증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취지의 약정을 하였고, 이 신용보증에 기하여 원고가 김DA에게 2억 원을 대출하였는데, 원고가 이 사건 시설물에 대한 양도담보의 취득 및 그 양도담보물의 유지·보전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잘못이 있는 사실을 인정하고나서,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에게 이 사건 특약에 따른 양도담보권 취득상의 과실 및 양도담보물의 유지·보전상의 과실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그러한 원고의 과실이 피고의 이 사건 보증책임 전부를 면책할 정도에까지 이르렀다고 볼 수는 없고, 다만 신의칙에 의하여 피고의 신용보증책임을 감액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데, 이 사건 시설자금의 대출경위, 원고 과실의 내용 및 피고가 이 사건 보증채무를 이행한 후 구상권을 행사하여 확보할 수 있는 담보물의 가치, 그 밖에 이 사건 시설자금의 대출 여부와 소요금액 등은 경상남도 지사에 의하여 확정되고 원고는 단지 그 실무만을 행하였던 점, 원고가 형식적으로나마 이 사건 시설을 확인하고 양도담보권을 취득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보증책임을 50%의 범위에서 면책함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신CA기금이 은행에 신용보증서를 교부하여 은행과 사이에 신용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위와 같은 내용의 특약 및 그 위반시의 보증채무 전부 또는 일부 면책에 관한 약정을 하였다면, 이 특약의 목적은 보증인인 신CA기금이 그 보증채무를 이행함에 따라 주채무자에 대하여 가지게 될 구상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채권자인 은행으로서는 당해 시설에 형식적인 양도담보권을 설정함에 그쳐서는 아니되고, 이 특약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의무를 다하여 신CA기금이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따른 구상권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적법한 양도담보권을 취득하도록 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16678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옳은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와 부대상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이 점을 타하는 상고이유 및 부대상고이유는 어느 것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상고 및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 및 부대상고비용은 패소자의 각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윤재식(재판장) 송진훈(주심) 변재승 이규홍